

CHAPTER 01  
FOUNDED

# 창업



## 1. 창업의 개념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 또는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를 갖고 자원을 결합하여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의 개념은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지원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창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창업, 벤처창업, 기술창업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제 2호)

구분	주요내용
기술창업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의미함.
벤처창업*	High Risk-High Return에 충실하며 반드시 기술창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음.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①벤처투자기업 ②연구개발기업 ③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 기술창업의 정의

기술창업은 혁신기술 및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
-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
- 신기술 또는 개발아이디어를 독립 기반위에서 영위하려는 창업
-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의 창업
-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요인인 기업의 창업
- 제품의 독창성, 사업의 독립성·사회성·국제성을 지닌 창업
- 신규 산업의 창출이 가능한 창업
- 기술의 우수성, 전문성,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술창업의 형태	
	① 창업보유센터에 입주하여 창업하는 형태
	② 기술을 이전받아 외부에 Spin-Off 하는 형태
	③ 대학 또는 연구소의 실험실 창업
	④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창업 등의 형태

## 3. 대학 기술(실험실)창업 절차

기술창업자가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기간의 장기화로 많은 창업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창업을 함에 있어 준비절차를 체계화하지 못했거나 사업화 검증절차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확인하여 기술창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창업 구성단계	창업자 분석	사업아이템 탐색	특허검색	소비자 시장분석
사업계획 수립단계	사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개발 단계	기술개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식재산권 확보
교내 행정절차 단계	소속대학 창업동의	무상공간 사용허가	교원창업허가 심사	법인설립
상품화 단계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인증
사업화 단계	마케팅전략 수립	사업 인·허가		공장설립

CHAPTER 02  
KOREA UNIVERSITY  
FACULTY START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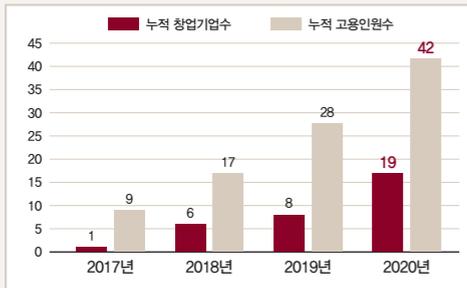
# 고려대학교 교원창업



## 1. 교원창업 현황

설립수, 투자현황, 보증현황, 분야별,

교원창업 현황 - 3년간 19개 기업설립



### 교원창업 기업 매출

- 연 매출 17억 원
- 서울소재 4년제 대학 1위 (2020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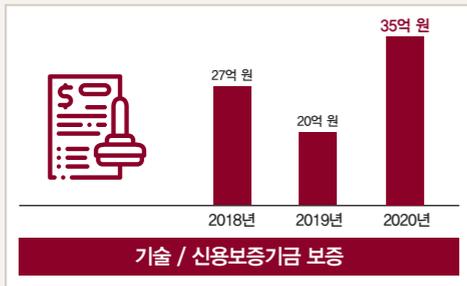
### 2020 교원창업 투자유치

- 투자유치 45억 원 (2021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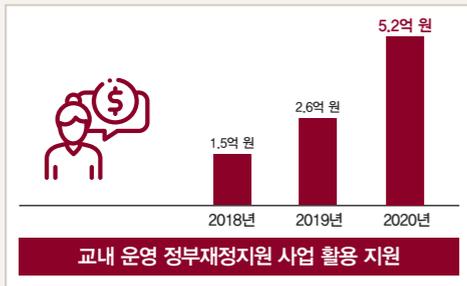
### 대표성공 사례

- 전기장 암치료 관련 기술 대상 사용화를 위한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외부 IR 지원  
→ 12억 원 규모 투자유치 및 20억 원 규모 정부보증지원 확보 TIPS 선정
- mRMA 기반 치료제 기술 대상 IP 전략, 비즈니스 컨설팅  
→ 30억 원 규모 외부 투자유치
- 인공지능 기반 기업 의사결정 보조기술 대상 기술지주회사 연계  
→ TIPS 선정 및 2억 원 투자유치

교원창업 기업 정부보증 확보 - 3년간 82억 원 유치



교원창업 시작품 제작 지원 규모 - 3년간 9.3억 원 지원



## 2. 교원창업 주요 프로세스

### 교원창업 절차



※ 창업허가기간 '기본 3년, 3년 경과 후 2년 연장가능'

### 교원창업 후 절차

-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기술사업화센터 교원창업 담당자에게 송부
- 2 | 대상기술(특허 및 노하우) 확인
- 3 | 자본금 및 주식현황 확인 후 기술사업화 계약서 초안 작성
- 4 | 개인정보 및 주식기부내역 확인 후 창업회사 직인 날인
- 5 | 최종 기술사업화 계약서 교부

※ 겸직 및 기술사용의 대가로 주식 10% 무상기부  
 ※ 매년 회사현황 및 매출액 조사

- 처리 : 기술사업화센터
- 교원창업 : 문준혁(내선 5836)

## 창업 구상 중 생각해야 할 10가지

### 1. 기업가 정신을 가져라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사업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 중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 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기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 아이템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여럿일 필요없이 제대로 된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충분합니다.

### 3. 자신만의 사업계획서 만들기

사업 아이템을 정했다면 본격적으로 사업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매출, 비용부터 향후 성장 목표, 외부 변수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대비까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 4. 10년 후까지 장기 플랜 세우기

초기 성공에만 올인하기 보다 EXIT 까지 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핵심 타겟 설정하기

사업의 주요 고객층을 분석하고 나이와 성별, 구매 장소와 시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사용 횟수도 핵심 고객을 선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 6. 판매루트 방식 결정하기

핵심 타겟을 결정한 뒤 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기

마케팅전략에는 반드시 저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8. 직원 및 회사 구조 계획하기

창업초기에는 3명 이하의 소수팀으로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지만 최소 3~5년 후 스케일업 단계까지 예측해 회사조직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9. 자금 마련 계획세우기

가장 중요한 사업자금 마련방안을 구성합니다. 본인 스스로 사업 자금을 갖추지 못했다면 외부투자자, 벤처 투자자, 온라인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등의 방법도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 10. EXIT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M&A인지, IPO 인지 설립 초기단계부터 EXIT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면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3. 관련 법/규정 및 구비서류

### 교원창업 대상자

제 4 조 (교원창업 신청요건) 교내 휴직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전임 및 비전임 교원으로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교원은 교원창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본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은 별도로 한다.

1. 본교 재직 중 취득한 대학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대학기술을 활용하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상근하는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3. 제1호의 대학기술을 활용하는 창업기업의 대주주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소유예정인 경우

### 의무

⑤ 창업기업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현황조사표와 재무제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학협력단은 창업기업에 대하여 주식기부 및 기술료의 납부근거와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창업자는 창업허가 및 기술실시에 대한 조건으로 창업기업의 **자본금 5천만원 중 자사까지 보통주식 10%를 산학협력단에 기부**하여야 하며, 교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보통주식 지분 기부의 합을 동일하게 10%로 적용한다. 다만, 추가 기부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협의할 수 있다.

⑧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사업계획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간

최초 신청시 **3년을 원칙**으로 하며 3년 경과 후 주관부서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2년을 연장** 할 수 있다

### 지원(지재권사용, 인프라활용)

**지재권사용** : 창업기업의 원활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자가 발명한 대학기술에 대하여 최초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 동안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창업기업에 허용**할 수 있다.

**인프라활용** : 본교 및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물적자원(토지, 건물, 지식재산권, 장비 및 S/W 등)과 교직원, 연구원 등 인적자원

### 검직

‘교원의 검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창업허가로 검직허가를 갈음함

### 행정지원

교원창업 담당자	성명	문준혁	소속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내선번호	5836	이메일	mjhking25@korea.ac.kr

### 공간 안내(산학관, R&D센터)

산학관 담당	성명	양홍직	담당업무	입주사 관리운영 및 창업보육지원
	소속	테크노콤플렉스기획관리부	직위	주임
	내선번호	02-3290-4007	이메일	niveacream@korea.ac.kr
R&D센터	성명	김민지	담당업무	창업지원 및 BI지원 사업
	소속	창업지원팀(겸: 창업교육팀, 창업보육팀, 창업원스톱팀)	직위	직원
	내선번호	02-3290-4654	이메일	min04@korea.ac.kr

대상자	교내의 휴직 또는 검직이 허용되는 (전입)교원
창업기간	창업허가기간은 창업허가일로부터 3년
검직허가 대가	교원창업기업 보통주식의 10%를 산학협력단에 기부

## 4. 위촉 자문위원 리스트

### 법률 분야

순번	소속	직위	성명	경력 / 이메일
1	푸른봄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전숙	국내 대학 법률 자문 경력 보유 junsook.kyung@prblaw.co.kr
2	푸른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소연	각종 협회 법률 자문 lawyer.syk@gmail.com
3	푸른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수민	지재권 관련 법률 자문 sumin.kim@prblaw.co.kr
4	노무법인 평로	노무사	구대진	정부기관 및 대학에서 경력 보유 corea70@nate.com
5	신앤 수 법무사무소	법무사	신천수	기술사업화 및 창업 관련 컨설팅 경력 보유 scs2306@hanmail.net
6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오승준	고대 교우창업기업 법률자문, KCC건설, 아라온테크 등 상장법인 자문 전문 salsatae@naver.com

### 세무/회계 분야

순번	소속	직위	성명	경력 / 이메일
1	비전세무컨설팅	세무사	유홍근	국세청 세무사, 스타트업 세무컨설팅 다수 경력 brtax@naver.com
2	세아회계법인	대표 세무사	최정호	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 전문위원 jeong6712@hanmail.net

### 투자 컨설팅 분야

순번	소속	직위	성명	경력
1	브릿지온벤처스	대표	손미경	국내외 엑셀러레이팅 및 투자심사역, 해외마케팅, 대기업 신사업개발 경력 danaemkson@gmail.com
2	선보엔젤파트너스	대표	오종훈	미래에셋 벤처투자, UNIST 기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paul.oh@sunboangel.kr
3	컴퍼니엑스	이사	강해영	TLO 경력 및 엑셀러레이팅 전문가 hykang@company-x.partners

순번	소속	직위	성명	경력
4	키움증권	기업 금융팀 이사	구본진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IPO 업무 담당 koobj@kiwoom.com
5	스틱벤처스	수석 심사역	류민기	산업은행 소속 전문투자경력, 국내투자 심사 mysticid@gmail.com
6	KB인베스트먼트	팀장	이기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IP사업본부, 벤처투자본부 펀드 운영 vc.leekiho@gmail.com
7	티인베스트먼트	대표	임형규	창업 초기 기업 투자 전문 벤터캐피탈 대표 hlim873@gmail.com

### 사업화 분야

순번	소속	직위	성명	경력
1	특허법인 다해	대표 변리사	김강욱	교내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투자유치 경험 보유 kwkim@ipdh.co.kr
2	치얼업 코리아	대표 이사	신경석	스타트업 기업회사 대표 cheerupkorea@gmail.com
3	시안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성익재	기보 소부장 강소기업 평가위원, VC활동, 벤처박스 엑셀러레이터 자문위원 등 ijseong@xiannip.com
4	노바렉스	차장	강주연	기업체 연구개발분야 전문가 kgy@novarex.co.kr
5	스텝모어	이사	이석직	TLO 경력 및 지주회사 자회사 이사 sjlee@stemore.co.kr
6	코리아이앤피	대표 이사	류재근	사업체 경력 25년, IT분야 기술활용 사업 운영 jsbyeon@eie.co.kr
7	스마트스코리아	대표	손호정	고려대 연구교수, 실험실창업경력 3년,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경험 smartooth@smartooth.co
8	K-ICT 창업멘토링센터	CEO 멘토	배성철	대기업 사업부장 경력,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가 jeffbae@gomentoring.or.kr
9	업테라	팀장	김호준	기업체 연구개발분야 전문가 hjkim@upptera.com

순번	소속	직위	성명	경력
10	신풍제약	직원	이지현	전 의료원산학협력단 기술성과파트 기술사업화 전담·의기주 기술창업 업무 cromljh@shinpoong.co.kr
11	동구바이오제약	선임 연구원	남기혜	바이오석사, 제넥신·한독·피씨엘 등 연구소 경험 gihea.nam@dongkoo.co.kr
12	아이피앤아이티	대표 이사	이권우	기술중개 및 법무법인 지재권 팀장 gwonu.lee@gmail.com

CHAPTER 03  
START A BUSINESS  
STEP BY STEP

# 단계별 창업하기



## 1. 창업구상 단계

### 기술창업 구성

창업자 분석	사업아이템 탐색	특허 검색	소비자 및 시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점 약점 분석</li> <li>투자능력 확인</li> <li>사업수행능력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수집 및 검토</li> <li>사업경험자 및 전문가 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검색</li> <li>법적 문제점 검토</li> <li>특허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 특성</li> <li>목표시장</li> <li>미래시장</li> </ul>

### 창업자 분석

창업자 분석은 기업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분석 항목이므로 창업자는 아래 항목을 자가 분석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창업자 분석 항목

분석 항목	분석 내용	
강·약점 분석	강점	창업자의 사업수행에 강점사항을 분석
	약점	창업자의 사업수행에 약점사항을 분석 및 보완
투자능력 확인	자기자본 확보상태	총 소요자금 중 자기자본 확보정도
	추가자금 조달능력	추가자금 조달능력 분석
사업수행 능력평가	소양과 적성	기업가정신, 통찰력, 창조력, 스케일, 리더십, 의지력 등
	경험과 지식	창업관련 분야의 경험, 창업자 능력, 학문과 지식, 인적 네트워크 등
	경영관리능력	창업멤버의 구성 및 조직관리 능력, 조직유지능력, 경영기획능력 등

### 사업아이템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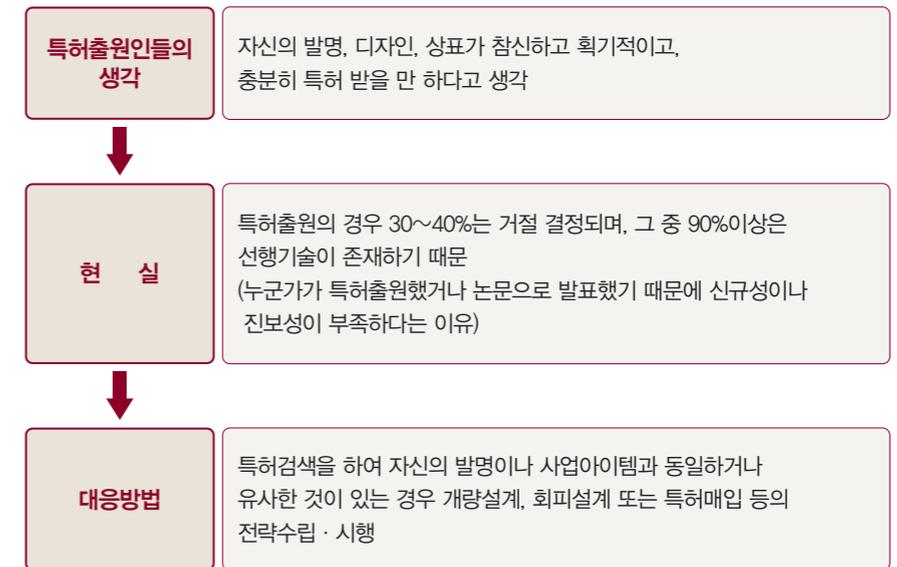
창업자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보유한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아이템 탐색방법은 제품탐색과 욕구탐색법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제품 탐색법	기존제품 탐색	기존제품 또는 성능 등 일부 변경한 제품을 기존시장 또는 신시장에 적용하는 방법
	신제품 탐색	신제품을 개발하여 기존시장 또는 신시장에 적용하는 방법
욕구탐색법		외적인 환경요소와 창업자 개인의 욕구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아이템 선정 방법

### 특허검색

#### 특허정보 검색의 필요성

##### ① 특허를 받기 위해



##### ②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특허정보는 전 기술분야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각각의 특허정보는 상세한 설명, 도면 등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담고 있어 창업아이디어 발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연구개발 방향설정과 연구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아이템을 개발하였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까지 받았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이고, 더 이상의 투자 가치가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기획 및 개발단계 등의 전 과정에 걸쳐서 특허정보를 검색하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기존 기술들을 참조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특허조사 내용

단계	조사 내용
기획단계	관심분야에 대한 특허기술동향 및 권리동향 파악
연구개발 단계	주기적인 최신 특허정보 조사를 통하여 연구방향의 확인 및 문제해결의 아이디어 획득
개발 완료 단계	타인의 선행특허에 대한 권리범위를 검토하여 특허로 청구할 권리범위 설정·조정

#### 소비자 및 시장성 검토

##### 소비자 및 시장분석

###### ① 소비자 분석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사업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창업자들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과신으로 보유기술만 믿고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실패를 겪게 됩니다.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구매 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여 사업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

구분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지역의 문화, 전통, 사회규범, 의식기준,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 등
개인적 요인	연령과 생애주기, 직업과 소득, 성별과 라이프스타일 등
심리 도식적 요인	동기(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자아실현 등) 태도(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학습된 선호 경향) 경험(소비자의 경험) 개성(사교성, 자율성, 사회성, 적극성, 과시성 등)
상황적 요인	커뮤니케이션 상황, 구매 전 상황, 구매 및 소비상황, 구매 후 상황 등

### ② 시장 분석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사업아이템의 진입시장을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기존시장분석	사업아이템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 기존 시장을 분석하여 시장진입가능 여부를 검토
신규시장분석	사업아이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시장을 분석하여 진입가능여부 검토

### ② 참고사이트

시장성 조사(해외) : <https://www.bccresearch.com/> (교내에서만 접속가능)

시장성 조사(국내) : <http://kmaps.kisti.re.kr/>

기술기회/경쟁정보 : <https://tod.kisti.re.kr/>

경쟁정보분석시스템 : <https://compas.kisti.re.kr/>

##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계획서 정의

사업계획서란 사업에 대한 밑그림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활동 범위, 자원의 활용 방법, 경영전략 등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사업성공의 첫걸음이 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목적

사업계획서 작성은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서 나타나는 변수를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추진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실제 프로젝트 실행 시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핵심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의 필요성

<b>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아이디어 또는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사업계획을 방지</li> <li>• 인사, 구매, 생산, 마케팅, 재무 등의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사전에 검토</li> </ul>
<b>계획 사업을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을 사전에 연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사업기간과 비용 절약</li> <li>• 계획 사업의 사전 점검을 통한 실패확률의 감소로 사업자에게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상승</li> </ul>
<b>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자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투자자, 금융기관, 정부 및 지자체 등)를 위한 설득자료로 활용</li> <li>• 사업자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자금조달이나 각종 정책지원을 받는데 활용</li> </ul>
<b>사업추진을 위한 소개자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간의 사업 제휴, 납품 또는 입점 계약, 디리점 또는 가맹점 모집, 공공기관 입찰 서류제출, 인허가 신청, 기술 및 품질 인증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회사소개 자료로 활용</li> </ul>

사업계획서 작성 계획

<b>전체 목차 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에 맞는 전체적인 목차를 구성하여 나열</li> <li>• 제품내용, 서비스 흐름, 사업모델 등에 관한 자료를 점검</li> <li>• 양식이 정해진 경우에는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li> </ul>
<b>시장분석 및 계획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기술, 경쟁사 등의 동향 및 특징 조사를 실시</li> <li>•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의 방향 및 실행계획을 수립</li> <li>• 사업내용과 유사한 참조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확보</li> </ul>
<b>계량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계획, 매출 및 비용계획, 손익분석 등의 분석 실시</li> <li>• 내용상 문제점 점검 및 피드백(실행계획 수정)</li> <li>• 목표로 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분석 실시</li> </ul>
<b>내용작성 및 편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차순서에 상관없이 쉬운 항목부터 세부내용을 입력</li> <li>• 유사 아이템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내용 작성</li> <li>• 내용 작성 후 서체, 글자크기, 색상 등을 통일하여 편집</li> </ul>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b>시장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 잠재력이 있는가?</li> <li>• 경쟁상대는 누구? 수익성은 어느 정도? 시장동향은 어떠한지?</li> <li>• 시장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정부의 각종 간행물(산업동향, 경제지표 등의 2차 자료)</li> </ul>
<b>경영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입지</b> : 회사의 입지는 고객, 공급자, 종업원, 접근성, 물류, 환경 등 법적인 가능성</li> <li>• <b>제조 및 외주</b> : 자가 제조와 외주처리 대상</li> <li>• <b>원자재</b> :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공급자, 가격</li> <li>• <b>장비 및 설비</b> : 필요한 설비를 목록화, 구입 및 임대결정</li> <li>• <b>노동기술</b> : 특별한 기술, 각 기술부문의 인원수, 임률, 기술인력확보 등결정</li> <li>• <b>공간</b> : 필요한 공간의 총량을 결정하여 소유재산으로 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등을 결정</li> <li>• <b>원가 및 판매일반관리비</b> : 제품의 원가와 제조에 필요한 아이템, 도구들, 각종 비용 등에 관한 것 등의 결정 정보</li> </ul>
<b>재무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년 간의 예상 매출액</li> <li>• 3~5년 동안에 투자비와 소요될 비용</li> <li>• 3~5년 동안의 현금흐름</li> <li>• 3~5년 동안의 재무제표</li> </ul>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

구분	내부운영용	자금신청용	투자유치용	사업제휴용	IR용	입찰제안용
회사개요		●	●	●	●	●
사업개요		▲		●	●	
제품 및 기술 현황		●	●	●	●	●
시장환경	●	▲	●	▲		
개발계획	●	●	●		▲	●
투자계획	●	●	●			●
마케팅 계획	●	●	▲	●		▲
생산계획	●					
조직 및 인원계획	●	▲		▲		
이익 및 재무계획	●	●	●	●	●	●
투자제안			●			

● 필수항목 ▲ 권장항목

## 사업계획서의 작성법

### 사업요약

작성항목	사업모델, 시장전망, 적용기술, 투자금액, 사업비전 등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과 무관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li> <l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독창성과 경쟁우위성 부각</li> <li>• 목표시장, 시장 추세 및 성장성 등에 대한 핵심사항</li> </ul>

### 회사개요

작성항목	일반현황, 주요 연혁, 비전, 경영이념, 조직, 지적재산권, 주주현황, 재무현황 등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li> <li>• 경영 조직의 핵심역량 부각</li> <li>• 회사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한 정량(수치)적인 기재</li> </ul>

### 사업개요

작성항목	사업필요성 및 효과, 사업영역, 사업배경 및 방향, 사업전략 등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핵심역량 및 사업목표(정량·정성)를 강조</li> <li>• 사업의 목적, 필요성 및 효과, 사업분야 및 영역 부각</li> <li>• 단계별 사업방향 및 전략 기재</li> </ul>

### 제품 및 기술현황

작성항목	제품개요, 제품구성, 제품특징 및 효과, 제품 관련 기술, 기술 우위성 등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제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경쟁 우위점을 강조</li> <li>• 자사 제품의 특징 및 차별성 기재</li> <li>• 핵심 기술 내용을 타 업체와 비교하여 작성</li> </ul>

### 시장환경

작성항목	시장현황, 시장규모, 시장전망, 경쟁현황, 고객동향, SWOT분석 등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분석 결과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li> <li>• 제시된 시장분석 자료에는 반드시 출처 및 근거를 기재</li> <li>• 경쟁현황은 반드시 지사와 경쟁사를 비교 분석하여 작성</li> </ul>

## 연구개발 계획

작성항목	개발 현황 및 방향, 개발 인력 및 비용, 개발 일정 등 연구개발 목표, 자체개발·산학협력·기술이전·아웃소싱 등 연구개발방법,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실적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향후 연구개발 전략과 연구개발 계획 및 예산은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포트폴리오와 연계된 기술개발 로드맵 강조</li> <li>•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성과와 향후 연구 방향 부각</li> <li>• 향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일정 기재</li> </ul>

## 투자계획

작성항목	사업장 및 시설공사, 설비 및 비품계획, 기타 투자계획 등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에 대한 명확한 산출 내역(근거) 제시</li> <li>• 시설 및 설비의 상세 내역 및 구매처 기재</li> <li>• 무형자산(특허권, 영업권 등에 대한 계획 기재</li> </ul>

## 마케팅계획

작성항목	마케팅컨셉, STP전략, 4P믹스전략(제품/가격/유통/판촉) 등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li> <li>• 구체적인 마케팅 예산 책정 및 기재</li> <li>• 경제사와의 차별화된 전략 부각</li> </ul>

## 생산계획

작성항목	생산공정, 레이아웃, 생산계획, 구매계획, 자재계획, 품질계획 등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한 상세하게 단계별 실험계획 및 예산 기재</li> <li>• 연도별 생산계획(규모) 및 산출근거 제시</li> <li>• 구체적인 품질 목표 및 관리 방안 기재</li> </ul>

## 조직 및 인원계획

작성항목	조직계획, 인력계획, 인건비계획 등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규모 및 경영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성이 포인트</li> <li>• 핵심 인재 구성 내역 및 확보 방안 기재</li> <li>• 사업 단계별 조직·인력계획을 상세하게 작성</li> </ul>

### 매출 및 이익계획

<b>작성항목</b>	매출계획, 제조원가계획, 비용계획,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대차대조표 등
<b>작성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 관련 수치는 반드시 산출근거를 제시</li> <li>•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연계성 확보</li> <li>•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의 추세 부각</li> </ul>

### 투자제안

<b>작성항목</b>	투자포인트, 주식가치 산출, 투자제안 등
<b>작성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내용 강조</li> <li>•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부각</li> <li>• 투자 조건 및 투자 회수방안 제시</li> </ul>

## 3. 기술개발 단계

### 기술개발 전략

창업자는 기술개발에 있어서 다수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보다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핵심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① 중요성에 따른 분류

다음 중 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해야 하는 프로젝트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기술개발
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	시간적으로 절박하지는 않으나 언젠가는 해야 하는 기술개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현재는 영향이 적지만 자원과 인력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기술개발

#### ②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장점 및 단점과 기술개발의 필요와 동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장점	단점
자체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과정에서 비밀유지</li> <li>• 직접 통제 가능</li> <li>• 개발비용 조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의 부족 및 개발비용 부담</li> <li>• 기술관련 전문지식의 결여</li> <li>• 시행착오에 의한 시간 낭비</li> </ul>
위탁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급 인력의 활용 가능</li> <li>• 전문지식의 보완</li> <li>• 시간의 효율적 사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비용의 부담</li> <li>• 직접 통제의 어려움</li> <li>• 기술정보의 유출가능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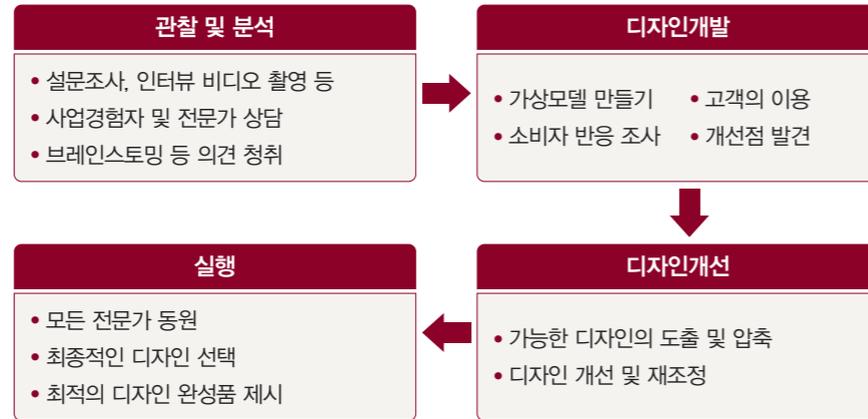
#### ③ 외부자원의 활용

기술수준의 낙후, 인력의 부족, 자금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학연구소	기술전문 연구기관	기술박람회	대기업 및 부품 조달업체
외부자원의 활용처			
동종업계단체	이종업계단체	기술지도기관	시험연구시설의 지원

## 4. 상품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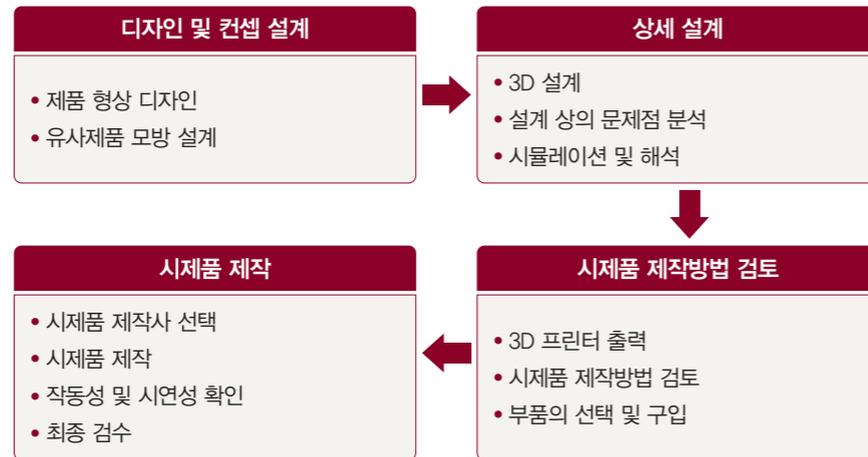
### 디자인 개발



#### TIP

<p><b>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제품과 목표시장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야 함</li> </ul> </li> <li>• 위탁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의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목표 및 사업수행기간, 가격, 창업가의 참여방법, 역할 구분, 검수방법 등</li> </ul> </li> <li>• 디자인 개발과정 및 내용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 과정 및 절차와 내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li> </ul> </li> </ul>
---------------------------------	---

### 시작품 제작



#### 시작품제작업체 검색

<https://www.k-startup.go.kr/common/prototype/prototypeList.do?mid=30192#>

## 5. 사업화 단계

### 마케팅 전략수립 프로세스

마케팅 전략수립 프로세스란 마케팅 문제해결과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와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보유 역량을 분석한 후 기업의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계획, 실행, 통제의 단계를 거쳐 수행됩니다.

계획 단계	상황분석	기업의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역량분석을 실시	고객욕구의 파악과정
	시장세분화	시장을 소비자유형(소비자집단)별로 나눔	고객욕구의 대응과정
	표적시장 설정	자사와 적합도가 가장 높은 매력적인 시장을 선택	
	포지셔닝	경쟁제품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마음속에 우리제품을 위치	
	마케팅믹스	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촉진전략	
실행 단계	전략 실행	자원확보, 마케팅조직의 구성, 스케줄 개발, 마케팅 프로그램 실행	
통제 단계	전략 통제	계획과 실행결과와의 비교, 실행과정의 수정 또는 계획의 수정	

### 인·허가 개요

인·허가 사항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이며, 세부적으로는 허가, 신고, 등록, 지정, 면허 등이 있습니다. 창업하려는 업종이 인·허가 대상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일단 도청, 시청, 구청에 알아보거나 「기업지원플러스 G4B 홈페이지(www.g4b.go.kr)」 또는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홈페이지(www.startbiz.go.kr)」에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인적 요건(자격기준 등), 물적 요건(사업장 및 시설 기준 등) 또는 순자산 요건(최소자본금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 제도

#### 신기술·신제품 인증

구분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목적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조기 발굴	• 기술표준원에서 사전평가 지표를 제공하여 인증의 효율성 제고
산업 트렌드	• 신기술 상용화 • 제품신뢰성 제고 • 기술기대 촉진 • 초기시장진출 조성	• 인증제의 품목 • 임상실험 필요 의약품 • 엔지니어링 기술 • KS, KICS 제품 • 이주가 되는 플랜트

구분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인증시점	• 신기술 개발 완료 후	• 제품 실용화한지 3년 이내 신개발 제품
준비사항	• 기술설명서 • ISO 인증서 • 제품시험 성적서 • 산업재산권의 인증 실적자료	• 제품설명서 •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 • 선행기술 조사서
관련업종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수기술 및 제품	•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실용화한 제품 •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
우대내용	• 기술우대보증 등 자금지원 시 우대 •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 사업화시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 판로확대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1577-0900(1544-7115)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1577-0900(1544-7115)

**공장설립의 개념과 유형**

**공장설립의 정의**

공장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이며 신기술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과 같이 정책목적에 따라 범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험실공장**

실험실 공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6. 회사 설립 단계**

**법인설립**

**사업주체의 결정**

창업자에게 적합한 회사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를 비교하여 창업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 사업자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설립	• 정관 작성 및 법인설립 동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	•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 책임	• 회사의 형태 및 출자형태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 사업주 개인에 의한 신속한 의사 결정가능	• 다수의 동업자나 경영진이 있을 경우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경영능력의 한계	• 개인기업주의 경영능력에 따라 한계에 이를 수 있음	•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 개인기업주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음
기업주 활동	• 기업주 활동의 자유	• 기업주 활동의 제약(상법 등)
자본조달	• 개인의 전액출자로 자본조달 한계	•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금 조달 가능
이윤분배	•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	•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 분배
기업영속성	• 기업주의 유고시 기업 활동의 중단	• 기업의 영속성 유지
세제상의 차이	• 소득세 과세(6%~38%) • 작은규모일 때 세금부담에 유리 • 대표자 본인의 급여 및 퇴직금 불안정 • 장부기장 등이 법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엄격	• 법인세 과세(10%~22%) • 일정규모이상일 때 세금부담에 유리 • 대표자의 급여 및 퇴직금 인정,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증빙 등의 엄격성 요구 • 업무무관 기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기타	• 대인접촉과 비밀유지에 유리 • 대외 신용도 취약 • 창의 노력의 극대화	• 출자금의 유가증권화 가능(재산 이전 용이) • 대외적인 신용 유리 • 경영관리의 효율성

※ 교원창업시 개인기업 / 법인기업 모두 가능함

**법인설립 체크 포인트**

- 1 법인형태결정 : 경영특성과 자본규모에 따라 결정
- 2 목적사업 :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내용
- 3 자본금 규모 : 자금조달시기 및 사업
- 4 발기인 및 임원구성 : 발기인 수 무제한, 1주이상
- 5 상호결정 : 관할 등기소에 사용가능 여부 확인
- 6 본점 소재지 : 학내 공간

**법인설립 절차**

순서	절차	내용												
1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실질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												
2	상호결정	• “주식회사”등과 같은 회사형태를 반드시 표기 • 대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하여 동일상호 사용법인 유무 조회												
3	정관작성	• 발기인은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규모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												
4	주식발행사항 결정	• 회사 설립 시 주식의 종류와 총수를 결정												
5	정관의 인증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 •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인정												
6	발기설립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출자의 이행 • 이사 및 감사 선임 • 설립경과 조사												
7	모집설립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 주식의 배정과 인수 • 주식대금의 납입 • 창립총회 • 설립경과조사												
8	등록면허세 납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등기 등록 종류</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법인등기</td> <td>영리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td> <td>0.4%</td> </tr> <tr> <td>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출자등가</td> <td>0.2%</td> </tr> <tr> <td>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td> <td>건당 112,500원</td> </tr> <tr> <td>지점 또는 분사무소설치 및 기타등기</td> <td>건당 40,2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등기 등록 종류	세율	법인등기	영리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0.4%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출자등가	0.2%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설치 및 기타등기	건당 40,200원
구분	등기 등록 종류	세율												
법인등기	영리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0.4%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출자등가	0.2%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설치 및 기타등기	건당 40,200원												

**사업자 등록**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①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

- 법인설립등기 완료
- 인·허가 및 신고 업종여부 검토
-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시·도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첨부서류**

-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 1부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자금출처소명서  
(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 1부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부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동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1부
-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안내

[https://tlo.korea.ac.kr/front/board/list.do?sep\\_cd=B03](https://tlo.korea.ac.kr/front/board/list.do?sep_cd=B03)

**벤처기업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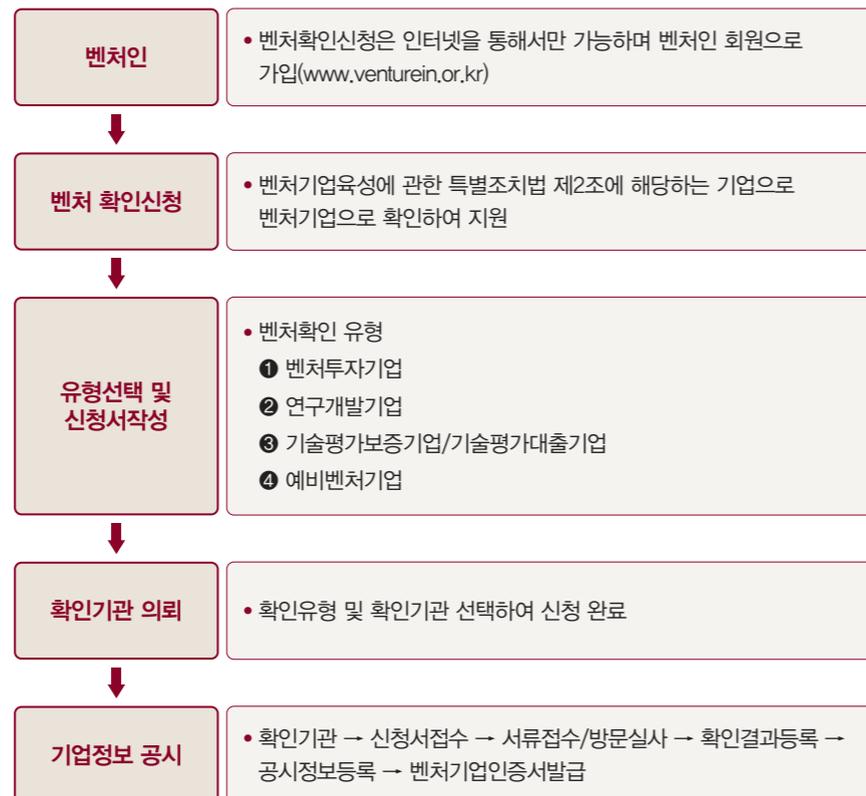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벤처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벤처기업우대제도**

창업	세제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 연구원창업 휴직가능</li> <li>• 산업재산권 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소득세 50% 감면</li> <li>• 취득세 75% 감면</li> <li>• 재산세 50%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닥 상장</li> <li>•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li> <li>•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li> </ul>

**벤처기업인증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유효기간**

- 유효기간 : 취소시 까지

**절차**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 작성 → 서류접수 및 운영상담 → 인정서/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

**인증 기업 혜택**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

※ 범례 ○ : 가능 △ : 일부가능 × : 불가능

## ISO

### ISO 인증개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기구)의 약어로서 원래 어원은 그리스어 'ISOS'이며 '동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ISO는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설비와 활동의 표준화를 통하여 국제 교역을 촉진하고 지적,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입니다. ISO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국제규격으로 ISO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기업이 국제 규격 요건에 근거하여 제품 및 서비스, 경영 방침을 삼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높은 신뢰감을 줌은 물론 인증 효과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체계가 규정된 요구 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 자체에 대한 품질인증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인증입니다. 공급자 측이 제3자 인증기관의 객관적·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받음으로써 구매자와 조직에게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인증에 따른 효과
  -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자격 심사 시 가산점
  - 단체 수의 계약 물량 배정 시 우대
  - 기보 기술평가와 신보 신용평가 시 우대
  - 시스템 확립으로 원가절감 및 품질·생산성 향상
  - 업무 효율성 증대
  - 인적자원 능력 향상
  - 중복업무, 누락업무의 발굴 및 시정조치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ISO 14001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입니다. IOS 14001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국제 표준 규격 요인에 근거해 환경경영을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적·물적자원

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증에 따른 효과
  -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직접비용 절감
  - 원자재 및 에너지 절감
  -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 국제적 신뢰 획득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이미지 개선
  -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최소화

**메인비즈**

**메인비즈**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상**

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 중
담배중개업	G46102 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I55 ~ 56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 중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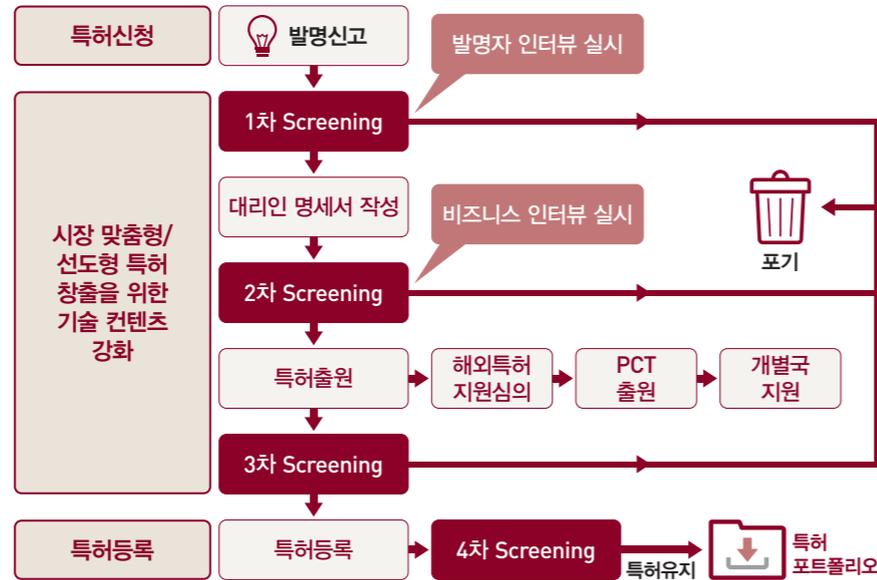
- 지정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 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구분	지원내용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보 보증시 보증료율 01%p 차감 우대</li> <li>• 신보 매출채원보험료 15% 차감 우대</li> <li>• SGI서울보증 보증 우대</li> <li>• 각 은행 연계 금리우대 (한국은행, NH농협,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한금융투자)</li> </ul>

구분	지원내용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광고비 감면 - TV, Radio 70% 할인, DMB 200% 보너스, KBS WORLD 100% 보너스</li> <li>• 방송광고제작비 50% 지원 사업 대상</li> <li>• 취업포털사이트 홍보</li> <li>• 구인 공고 시 메인비즈 인증기업으로 홍보</li> </ul>
중기청 / 판로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li> <li>•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가점 2점)</li> <li>• 기술지킴이서비스(신청자격 부여)</li> <li>•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메인비즈 인증 기업 평가 배점 3점)</li> <li>•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신청조건 완화)</li> <li>•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가점부여)</li> <li>• 판로 및 수출지원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신청자격 부여, 우대)</li> <li>•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가점 5점)</li> <li>•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가점 1.5점, 제조기업 가점 2점)</li> <li>•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전시회 참여 선정시 우대)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가점 2점)</li> </ul>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컨설팅</li> <li>•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li> </ul>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능요원제도(추천우대, 가점 10점)</li> <li>• 일학습 연구기관 지정(사업 참여조건 완화)</li> </ul>

지식재산

지식재산 관리 프로세스(kips.korea.ac.kr)



발명인터뷰 프로세스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사업화센터)

해외특허지원 프로세스



세무

창업 시 주금의 가공(가장)납입

-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법인설립 시 발기인들이 법인의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 상법 상 가공납입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가공 납입액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 국세청에서도 가공납입에 대한 세무상 사후관리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회사 설립 시 주금 가공납입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무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며 사업의 개시와 함께 법적 요건에 맞추어 기타 행정절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근로자는 법인의 임원 및 대표자를 포함하며, 고용 및 사·보험의 근로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

- 신청과 각종 변경 및 탈퇴에 관련된 신고는 4대 보험 공통서식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co.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비교표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법인 및 전문직종 개인 사업장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일반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 의무 가입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신고기한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에서부터 14일 이내		• 가입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날 15일까지	
부과소득 상한선	• 9925만원(등급 없음)	• 468만원(등급 없음)	• 상한선 없음	• 상한선 없음
보험료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 씩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 씩 부담	•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부방법	• 월납	• 월납	• 연납(분할납부 가능)	• 연납(분할납부 가능)
납부마감일	•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 당해 연도의 3.31까지 (연도 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 당해 연도의 3.31까지 (연도 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납부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사업주

7. 운영 단계

7-1 회계/세무

회계시스템 관리 및 활용

구분	주요내용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누락 없이 즉시 기록함</li> <li>• 회계처리방법, 계정과목 등은 일관성 있게 처리</li> <li>• 가자금이나 가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li> <li>• 연구개발비계정을 정확하게 기장</li> </ul>
위탁기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으로 기초적인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li> <li>• 영수증,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지출과 연관이 되는 서류도 제출</li> <li>• 회사의 사업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류도 제출</li> <li>• 정기적(매월 또는 3개월 단위)으로 기장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지를 확인</li> </ul>
회계정보의 활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및 매출액과 관계비용의 증감내용을 파악</li> <li>• 회계정보를 월별비교, 연도별 비교, 산업표준과의 비교, 경쟁기업과의 비교를 함</li> <li>• 매출액과 발생비용의 구성 비율을 파악</li> <li>• 자금의 차입, 투자 유치, 정부과제의 수행, 지원제도의 활용 시 관련 자료를 제출</li> </ul>

절세전략

창업시 절세

- 개인과 법인의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창업 시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초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업 전에 설비, 비품 등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

- 사업과 관련된 사실은 반드시 장부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거래의 증빙을 위해 대금 결제는 반드시 은행(통장)을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빠짐없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시설 등에 투자하여 그 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에 규정된 각종 가산세 항목을 숙지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각종 충당금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사업포괄양수도'방식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매출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여 매출누락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는 철저히 받아 공제 가능한 것은 모두 공제 받아야 합니다.
-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반드시 검토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수출 할 경우에 면세 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환급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전산시스템에서 100% 추적조사)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전월말(6월말, 12월말)에 대량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불성실하게 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 외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에는 탈루세액 및 가산세의 추징은 물론, 누락된 소득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에게 법인이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준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7-2 재무관리**

**필요현금 예측**

창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산출을 위한 추정 재무제표 작성 시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야 함

**소요자금 예측 Process**

**사업 시나리오 분석**



**7-3 기술지주회사 연계 프로그램**

**기술지주회사 연계 프로그램**

**FUND**

고려대학교 대학창업 제1호 개인투자조합 (규모 30억원)	미래 ESV 개인투자조합 제1호 (규모 125억원)	고려대학교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 개인투자조합 제1호 (규모 50억원)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개인엔젤투자조합 제2호 (규모 3억원)
<b>2017년 8월 결성</b>	<b>2019년 1월 결성</b>	<b>2019년 8월 결성</b>	<b>2019년 1월 결성</b>
대학생 및 교원 창업기업에 투자 (기업당 최대 3억원 투자)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 (기업당 최대 10억원 투자)	R&D 성공판정을 받거나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스타트업에 투자 (기업당 최대 5억원)	본교 기술기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

**TIPS Program**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민간투자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엑셀러레이터의 역량을 보유한 TIPS Program 운영사가 창업팀에 투자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추천할 경우 정부의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려대 기술지주회사는 사업계획서 빌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팀의 TIPS Program 선정에 기여합니다.

**Value Up Program**

**기업창업 토탈 솔루션 제공**

- **Technology**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필요한 기술 연계, 전문가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한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Fund**  
직접 투자 외 스타트업 단계별 VC 후속 투자 연계, 연 2회 분야별 IR 개최(바이오/ICT),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용자 지원프로그램 연계.
- **Space**  
대학 및 지역의 컨소시엄을 통해 창업팀의 보육공간을 제공.
- **Network**  
국내외 VC 및 스타트업 업계 종사자 네트워킹, 관련분야 전문 멘토 매칭.
- **Global**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지역에 위치한 해외 엑셀러레이터와 프로그램 연계, 연 2회 글로벌 IR 개최,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정부지원**

**창업 단계별 지원사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도약기
<b>창업진흥센터</b>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분야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과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유관대학 연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초기 1년~3년차 기업지원	<b>기업지원센터</b>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 대상 유통, 마케팅, 투자,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주관기관 : 지스트 창업진흥센터 모집규모 : 전국단위 40개 팀 모집분야 : AI 분야 지원금액 : 평균 51,700천원/팀	<b>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b>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 창업초기 기술창업자 연계지원  <b>기업지원센터</b>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우수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아이템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 정립, 아이템 검증을 위한 교육, 멘토링,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관기관 : 지스트 기업지원센터 모집규모 : 전국단위 30개 팀 모집분야 :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창업기업 지원금액 : 평균 170,000천원/기업

**신청절차**



**참고사이트**

**창업진흥원**

<https://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List.do?mid=30004&bid=701&searchAppAt=A>

**서울산업진흥원**

[https://new.sba.kr/web/contents/contentsListPage1.do?category1=COMPANY\\_SUPPORT&category2=01](https://new.sba.kr/web/contents/contentsListPage1.do?category1=COMPANY_SUPPORT&category2=01)

**서울R&D지원센터**

[https://seoul.rnbd.kr/client/c030100/c030100\\_00.jsp](https://seoul.rnbd.kr/client/c030100/c030100_00.jsp)

**NTIS**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mng.do>

7-4 보증 및 융자

일반보증, 유테크밸리

일반보증, 유테크밸리 차이점(1)

	일반보증	U-TECH밸리 보증
대상기업	• 일반기준에 따름(전문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가능, 창업 후에는 별도의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제도 없음)	• 협약대학 소속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창업 후 5년 이내)으로 대학의 추천을 받은 기업
보증한도	• 1차년도 추정 매출액 범위 내에서 1회전 운전자금(통상 3개월)	• 30억원(보증+투자) *신보 Blue Elite : 15억원
보증심사	• 건별 신청 · 심사	• 1회 신청 · 심사, 사전한도 부여(3년간)
부분보증	• 85%(요건충족 & 창업 후 1년 이내 : 100%)	• 90%(창업 후 1년 이내 100%)
연대보증	• 면제요건 충족 시 면제 • 기존 보증 입보 시 신규보증 면제 불가	• 전면 면제 • 기존 보증 입보건이더라도 신규보증 면제

일반보증, 유테크밸리 차이점(2)

	일반보증	U-TECH밸리 보증
보증료	• 1.2%(기금 평균)	• 0.5% 고정보증료
기술평가료	• 업체 부담	• 면제
보증금액 사정특례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R&D자금 선 지원금액이 1억원 초과 시 추정매출액에 연계하여 보증지원 가능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R&D자금 선 지원금액에 불구하고 운전자금 2억원까지는 추정매출액에 관계없이 보증지원 가능
기타 우대	-	• 보증연계투자 우선추천 컨설팅 지원, IPO 지원 • 벤처 · 이노비즈기업 우선선정
평가조직	• 일반 영업점	• 중앙기술평가원(전문평가 조직)

참고사이트

관련링크 : <https://www.kibo.or.kr/main/work/work010606.do>

7-5 투자유치

투자유치 준비 사항

사업계획서 준비	지분에 대한 개념정립	기업의 투명성 확보
• 현재가치 보다는 미래가치 부각	• 투자유치 후 경영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계획	•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경영성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 1차의 투자유치가 2차, 3차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투명경영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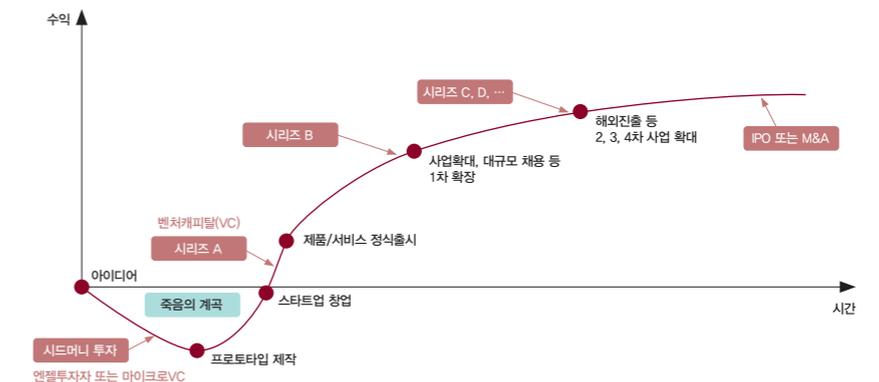
투자자의 관심 사항

경영자	제품	사업성
• 경영자의 경험 및 경력 • 경영자의 도덕성 • 경영능력	• 기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 여부 • 경쟁사와의 차별성	• 성장산업 여부 • 합리적인 수익성 수반 가능성 • 투자금 회수가능성(배당, IPO등)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요령

투자유치 시기	우선주 중심	추가 투자유치
•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창업 초기보다는 매출 실현 시기 등)	•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보통주는 최소한으로 부여	• 2차, 3차 투자유치를 위해 지분에 대한 전략 수립

스타트업의 투자단계



**IR(Investor Relations) 자료의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	주요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의 일반개요</li> <li>기재사항 : 업종, 설립시기, 자본금, 주주구성, 경영진 등</li> </ul>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M을 포함한 사업전반의 내용과 SWOT 분석을 언급</li> <li>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li> <li>기재사항 : 제품/서비스 내용, 요소기술, 시장분석, 경쟁업체분석, 마케팅전략, 위험관리방안</li> </ul>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을 실제 진행하기 위한 세부계획</li> <li>기재사항 : 연구개발계획, 생산계획, 영업계획 등</li> </ul>
재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내용 및 운영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 및 결과물</li> <li>과거 및 추정재무제표, 자금조달 및 소요계획, 투자조건 및 회수방안 등</li> </ul>

**벤처캐피탈의 기능**

<b>High Risk High Return 기업에 집중 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 기술 벤처의 초기자본을 담당</li> <li>위험부담은 크지만 성공하면 고수익을 보장하는 벤처기업의 속성과 일맥 상통</li> </ul>
<b>IPO전까지의 모든 서비스 제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의 IPO 전까지 필요한 경영자원, 재무 및 회계 등 Value-Added 서비스 제공</li> <li>투자 이후의 활동, 즉, 벤처기업에 대한 백업</li> </ul>
<b>포트폴리오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트폴리오 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li> <li>특정 분야의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각 포트폴리오 업체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네트워크 형성</li> </ul>
<b>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벤처 산업자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캐피탈은 전통적인 금융이 담당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금융의 선두 주자</li> </ul>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하지 않는 기업**

<b>투자하는 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li> <li>경쟁사 대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li> <li>독창적인 판매망을 갖춘 기업</li> <li>경영자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li> </ul>
<b>투자하지 않는 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범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li> <li>너무 혁신적이어서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li> </ul>

**8. 성장 단계**

**창업기업 성장단계**

**기업설립 후 1년차 ~ 3년차**

- 초기 기술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제도 활용
- 초기투자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활용 - 초기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투자 → 정부지원 TIPS과제로 연계
- 연구개발특구 내의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R&D과제를 통해서 초기사업화 검증 → 정부과제 연계
- 창업초기의 자본금 확대를 위한 엔젤투자 유치 → 엔젤투자클럽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관리기관)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초기창업패키지지원사업 연계 (아이템사업화)

**기업설립 후 3년차 ~ 7년차**

-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관리기관)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창업도약 패키지지원사업 연계(아이템 개선)
- 시리즈A 투자유치를 위한 벤처캐피탈 자금 연계 10억원~30억원
- 아이템을 통한 매출확장,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개발성장과제 활용

**기업 합병 및 매각**

**교원 창업기업 합병 및 매각 시 절차**

- 합병사유, 합병조건, 매각사유, 매각조건 등의 합병 및 매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창업주무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창업주무부서는 연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합니다.
- 연구위원회 심의(합병 및 매각에 따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
- 심의 결과 통보

## 9. 기업 상장(IPO)

### 코스닥(KOSDAQ)의 개념

#### 코스닥 상장

- 기술창업기업 매출과 고용의 선순환구조 확보
- 공개자금시장을 통한 자본금 확충과 회사 확장
- 시리즈B 투자유치와 제품양산을 위한 정책자금 수요 발생
- 기업운영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

코스닥이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직접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가증권 시장

<b>코스닥 상장의 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상증자, 해외DR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의 조달가능성 증가</li> <li>• 기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및 기업인지도 제고에 기여</li> <li>•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경영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음</li> <li>•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li> </ul>
-------------------	---

###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의 개념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이 개설되는 중소기업전용 신시장

<b>코넥스 상장의 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상증자, 해외DR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음</li> <li>• 기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및 투자자에 대한 기업인지도 제고</li> <li>•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조성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가능</li> </ul>
-------------------	--

###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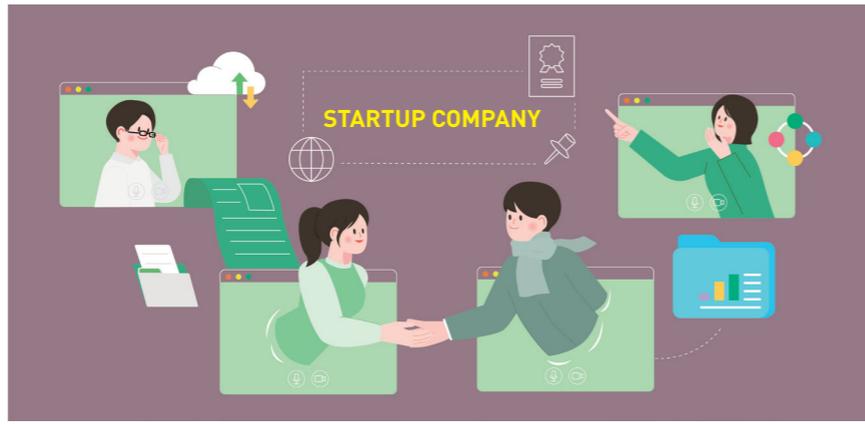
#### 외형요건

구분		내용	비고
재무내용	일반기업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순이익 3억원 이상	택일
	벤처투자기업	매출액 5억원 이상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2억원 이상 중 택일	택일
주권의 양도제한		정관 등에 양도제한의 내용이 없을 것 * 다만, he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합병		합병 등(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을 한 경우 그 이후 결산이 확정되었을 것 * 다만, 합병 등의 완료일 이후 사업연도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 다음연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액면주식에 한함

※ 벤처투자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함.

CHAPTER 04  
STARTUP COMPANY SUPPORT  
ORGANIZATION AND UTILIZATION  
SYSTEM

# 창업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 1. 창업관련 기관 안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관련 행정처리 기관

기관명	담당업무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 <a href="http://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a>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통합신고
국세청	사업자등록	국세청 ( <a href="http://www.nts.go.kr/">http://www.nts.go.kr/</a> )	
금융결제원	주식납입금 수납, 주금납입보관증명 발급	금융결제원 ( <a href="http://www.kftc.or.kr/">http://www.kftc.or.kr/</a> )	
대법원	온/오프라인 상호검색 및 법인설립등기	인터넷 등기소 ( <a href="http://www.iros.go.kr/">http://www.iros.go.kr/</a> )	
법무부	공중인조사보고,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	법무부 ( <a href="http://www.moj.go.kr/">http://www.moj.go.kr/</a>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 <a href="http://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a>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보제공

기관명	담당업무	홈페이지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창업정보 제공	<a href="http://www.venture.or.kr/">http://www.venture.or.kr/</a>
온라인 원스톱 재택창업시스템	회사설립정보 및 창업 컨설팅	<a href="http://www.startbiz.go.kr/">http://www.startbiz.go.kr/</a>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 및 중소기업확인 정보 제공	<a href="http://sminfo.smba.go.kr">sminfo.smba.go.kr</a>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회정보, 정책정보 제공	<a href="http://www.mss.go.kr">www.mss.go.kr</a>
창업진흥원	창업기회정보, 정책정보 제공	<a href="http://www.kised.or.kr/">http://www.kised.or.kr/</a>

### 중소기업 지원 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a href="http://www.kibo.co.kr">www.kibo.co.kr</a>	1544-112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반 성장 지원)	<a href="http://www.win-win.or.kr">www.win-win.or.kr</a>	02-368-87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 지원)	<a href="http://www.kotra.or.kr">www.kotra.or.kr</a>	1600-7119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a href="http://www.klac.or.kr">www.klac.or.kr</a>	132
대한상공회의소	<a href="http://www.korcham.net">www.korcham.net</a>	02-6050-3114
벤처기업협회	<a href="http://www.venture.or.kr">www.venture.or.kr</a>	02-6331-70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	<a href="http://www.semash.or.kr">www.semash.or.kr</a>	1357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a href="http://www.kodit.co.kr">www.kodit.co.kr</a>	1588-656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지원)	<a href="http://www.koreg.co.kr">www.koreg.co.kr</a>	1544-7365
신용회복위원회 (재도전 지원)	<a href="http://www.ccrs.or.kr">www.ccrs.or.kr</a>	1600-550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및 정보화 지원)	<a href="http://www.tipa.co.kr">www.tipa.co.kr</a>	042-388-0100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a href="http://www.innobiz.or.kr">www.innobiz.or.kr</a>	031-628-9600
중소기업유통센터 (판로 지원)	<a href="http://www.sbdc.co.kr">www.sbdc.co.kr</a>	02-6689-9000
중소기업융합중앙회	<a href="http://www.k-sca.or.kr">www.k-sca.or.kr</a>	042-867-5506
중소기업중앙회	<a href="http://www.kbiz.or.kr">www.kbiz.or.kr</a>	02-2124-3114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	<a href="http://www.sbc.or.kr">www.sbc.or.kr</a>	1357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창업진흥원 (창업 지원)	www.kised.or.kr	1357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www.kmtca.or.kr	02-569-8121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 지원)	www.ksure.or.kr	1588-3884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1566-5114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 지원)	www.k-vic.co.kr	02-2156-2000
한국벤처캐피탈협회	www.kvca.or.kr	02-2156-21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02-3460-91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	www.keit.re.kr	1544-6633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등)	www.kicox.co.kr	070-8895-7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력 지원)	www.hrdkorea.or.kr	1644-800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womanbiz.wbiz.or.kr	02-369-0900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vwa.or.kr	02-3440-7460
한국엔젠투자협회	home.kban.or.kr	02-3440-7400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도전 지원)	www.kamco.or.kr	1588-3570
한국장애통계인협회	www.kdea.or.kr	02-6339-6711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www.kmcca.net	042-256-1070
한국창업보육협회	www.kobia.or.kr	042-346-9600

기관명	홈페이지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
기업마당	www.bizinfo.go.kr
기업지원플러스 (G4B)	www.g4b.go.kr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www.imstars.or.kr
벤처전문취업포털	www.v-job.or.kr
벤처확인 · 공시시스템	www.venturein.or.kr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상권정보시스템	sg.sbiz.or.kr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기관명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통합교육시스템)	edu.sbiz.or.kr
수출인큐베이터	www.sbc-kbdc.com
워크넷 (고용부)	www.work.go.kr
이노비즈넷	www.inobiz.net
중소기업기술개발 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mss.go.kr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	it.smba.go.kr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www.smbacon.go.kr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www.sme-expro.go.kr
FTA종합지원센터	okfta.kita.net
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K-startup 사이트 (창업지원정보 포털)	www.k-startup.go.kr
Yes!FTA (관세청 FTA포털)	www.customs.go.kr

- ①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② 기업금융나들목(http://www.smefn.or.kr)
- ③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④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⑤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CHAPTER 05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교원(실험실)창업 및 기술지주회사 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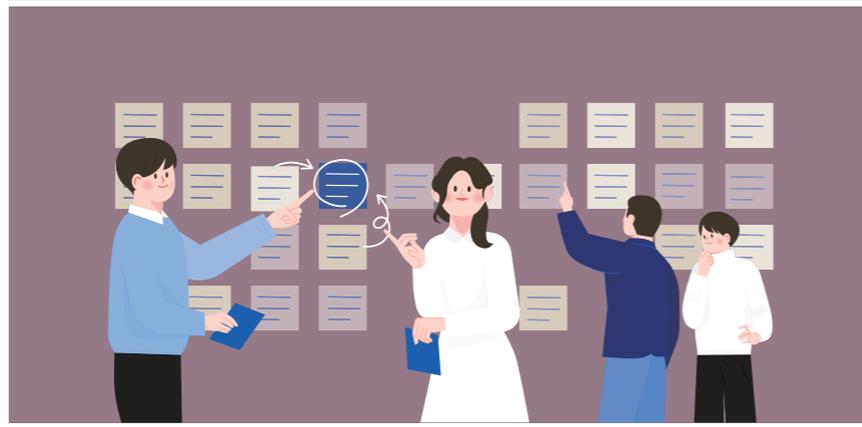
구분	교원(실험실)창업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개념	• 발명자가 관련 법률에 근거, 학교장의 승인으로 창업하고, 창업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모델(개인영리사업의 성격)	•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자회사를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조직으로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모델
소관법률 (인가부처)	대학 내규 (학교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6조의2(교육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사업화</li> <li>• 각 (창업)회사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하는 겸직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창업기업에 임직원으로 활동 가능</li> <li>• 상법상의 영리회사로 설립, 운영(산학협력법 제36조 상의 학교기업과 별개)</li> </ul>	
지분구조	• 창업자에 의한 독자적 지분구성(일반적으로 대학과의 계약에 의해 소규모의 지분을 기부, 창업기업 지분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10% 이상 보유</li> <li>• 현물출자 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발명자 보상</li> <li>• 현물과 현금 투자 가능</li> </ul>
지재권 (라이선싱)	• 지재권은 대학소유가 기본, 필요 시 계약에 의해 개별 실시권 확보 또는 양수도(계약에 따라 기술료 지급)	• 자회사로 지재권 출자

구분	교원(실험실)창업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창업자)의 독자적인 경영과 기업의 소유형태로 사업화의 자율권 확보</li> <li>•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자(교수, 발명자) 지분율 확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의 사업실패 시, 기술지주회사가 완충역할을 수행(회계, 법률적 책임 등)</li> <li>• 사업화전문가들의 경영지원을 통해 사업성공률 제고(경영관리, 파이낸싱 등)</li> <li>• 발명자의 과도한 경영참여부담 및 재무적 부담 해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실패의 책임은 창업자</li> <li>• 낮은 성공률(경영경험 부족 및 수업, 연구, 기타 활동 병행이 일반적)</li> <li>• 사업실패 시, 의도 되지 않은 대학의 피해 발생 가능(사업에 대한 통제, 관리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초기 설립,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li> <li>• 단독설립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회사 지분율 가능성</li> <li>- 사업의 성공률과 규모 제고를 통해 전체 수익 발생을 키우는 보완이 가능</li> </ul>

\*자료: 대학 창의적 자산 기반 창업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2016

CHAPTER 06  
QUESTIONS AND  
ANSWER

# QnA



### Q. 예비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요?

- A. 기술보증기금의 벤처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에게,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경우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 Q. 창업 허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인가요?

- A. 건별로 차이가 있으나 신청부터 허가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Q. 연구교수인데도 창업이 가능한가요?

- A.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교원이라면 가능합니다.

### Q. 제가 발명한 기술인데, 창업 후 왜 실시권 계약을 하나요?

- A. 발명자는 연구자이더라도, 직무발명이므로 출원인이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 Q.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창업해도 되나요?

- A. 교원창업은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주의 책임범위나 대외신뢰도 등을 감안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Q. 법인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 A. 법적으로는 최소 100원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나, 너무 적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면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등록 거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Q. 법인설립 시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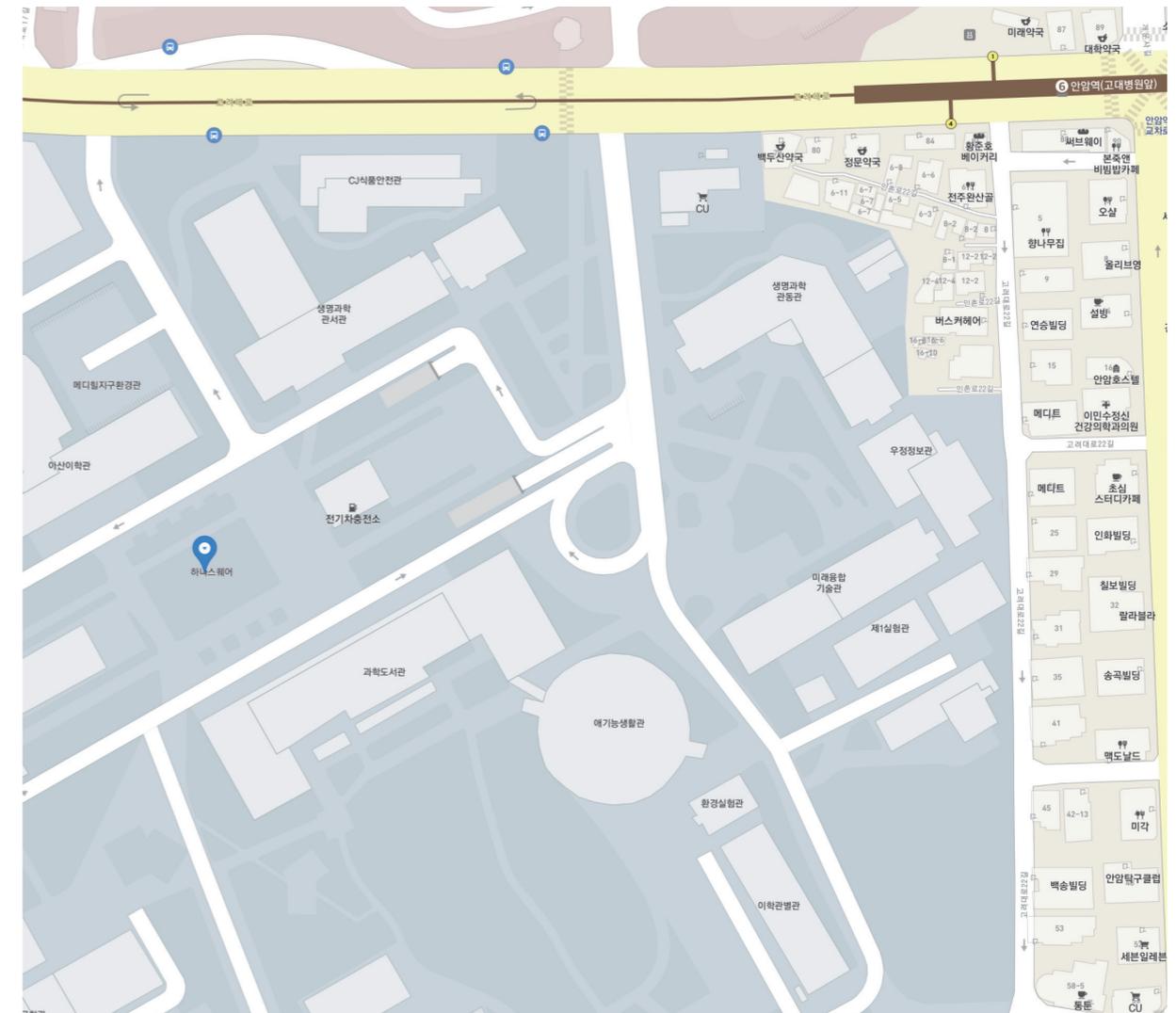
- A. 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의 경우는 이사를 1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1명, 주식 없는 임원 1명 (이사 또는 감사)로 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INFORMATION ON THE  
LOCATION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ENTER

145 Anam-ro, Seongbuk-gu, Seou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enter, B108, B1, Natural Science Campus

## 기술사업화센터 위치 안내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자연계캠퍼스 지하 1층 B108호 기술사업화센터



출처 대학창의적 자산 기반 창업 길잡이, 교육부/연구재단  
기술창업 가이드북, 한국기술벤처재단